

제 12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

제1조(입소정원)

- 시설의 입소정원은 49인으로 한다.
-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,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(특례입소자)를 입소시킬 수 있다. 다만,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2조(모집 방법)

-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한다.
-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전단 및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모집한다.

제3조(입소 대상)

- 이용대상은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에 장기요양 시설등급을 인정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장기요양 시설등급이 없어도 시설급여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, 반드시 시청 및 공단에 등급외자로 신고 하여야 한다.
- 입소자 또는 그 보호자는 시설장과 급여(서비스)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입소계약을 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시설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소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한다.

제 13장 입소계약

제1조(계약 목적)

- 시설과 입소자,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하거나 보호자와 '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' (이하 "계약" 이라 한다)을 체결 한다.
- 장기요양기관은 '가'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)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
제2조(계약기간)

-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-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
제3조(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)

-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.

이용료(급여비)

구분	1등급	2등급	3,4,5등급
1일	90,450원	83,910원	79,240원

-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등급외자는 시설과 입소자(보호자)의 상호 합의에 의해 이용료를 산정한다.
- 기타 비용 부담액(이하 "비급여")은 식사재료비, 간식비, 상급침실 이용료, 진료약제비 등이 있다
- 시설필요에 의해 상급침실 이용 시 별도의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으나,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 등의 이유로 이용 시에는 상급침실 이용료가 발생한다.

이용료(비급여비)

구분	1일당	30일 기준
식사비	3,800원 * 3식 = 11,400원	11,400원 * 30일 = 342,000원
간식비	1,000원 * 2식 = 2,000원	2,000원 * 30일 = 60,000원
상급 침실료	5,000원	5,000원 * 30일 = 150,000원

제4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)

-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-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.

-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.
-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-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.
- 입소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-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-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.
-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.
-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퇴소(전원)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.
- 시설의 협약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가 지정한 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.

제5조 (신원인수인의 의무)

-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.
-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.
-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.
-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의무.
-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, 입,퇴소 절차, 입원 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.
-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 및 비품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복구 의무.

제6조 (계약 해지)

- 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.
-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)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- 2)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- 3)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 - 4)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 - 6)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있을 때
 - 7)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제 1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

제1조 (이용료 변경)

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를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제2조 (이용료 변경절차)

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

- 1) 장기요양등급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.
- 2)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.
- 3) [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]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.
- 4)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통보한다.

제 1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
제1조 (급여제공)

- 입소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입소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, 훈련 등을 제공 한다.
- 일 3회 이상 영양, 입소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 한다. 다. 주 1회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 한다.
- 입소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 한다.
- 입소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 한다.
-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 한다.
-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, 정기적으로 물리(작업)치료를 제공하도록 한다.
- 입소자의 정서 지원을 위해 년 1회 시설 주최 행사(어버이날)를 개최하여 수급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 한다.

- 입소자의 정서 지원을 위해 월 1회 진행되는 생신 잔치 시 시설에서 준비한 선물을 제공한다.
- 월 1회 정기적 체중 측정을 통해 입소자의 건강 관리 및 보호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.
- 입소자의 취침 후 자유 개인 시간 보장을 위한 개별적 공간을 설치하여 입소자에게 제공한다.

제2조 (이용료 납부)

- 입소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이용료명세서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납부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.

제 16장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

제1조 (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)

-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
 - 1)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,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의 상태가 긴급할 경우
 - 2)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
-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심신 상황,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,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.
-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,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,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,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,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.

제2조 (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)

-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종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-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.

제 17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

제1조 (간호(조무)사의 활동사항)

- 간호(조무)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-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, 체중, 혈압, 체온,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간호(조무)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- 간호(조무)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
제2조 (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에 관한 사항)

시설은 [노인복지법 시행규칙]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5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의사를 지정한다.

제2조 1 (계약의사 지정)

- 시설장은 지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계약의사를 지정하되,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.

제2조 2 (계약의사 진료)

- 계약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수급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3조 (외래병원 또는 의원 및 약국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)

- 가벼운 질병 등(내과, 이비인후과 등)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또는 의원 및 약국을 방문한다.
- 입소자의 병원진료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에 관해 통보 및 동의를 득한 후 시설 종사자가 동행할 수 있다.
-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
제4조 (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)

-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-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,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.

제5조 (전원조치에 대한 사항)

-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.
-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.

제 18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

제1조 (시설 사용상의 주의사항)

-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이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입소자는 이를 준수한다.
- 입소자는 거실 등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입소자 상호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사용한다.
- 입소자의 가족이 간병 등 시설의 일시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.
- 입소자는 신원인수인등 연고자의 요청으로 시설의 승낙을 받아 지정된 시간, 기간 동안에 외출, 외박 등을 할 수 있으며 연락처 및 목적지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입소자와 보호자가 음식물, 의약품등을 시설에 반입 시에는 시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제2조 (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)

-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,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.
- 입소자의 가족이 시설물의 일시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제 20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,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

제1조 (배상책임 및 면책범위)

-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(보호자)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.
 - 1)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2)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3)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4) 학대 [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]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-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(보호자)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- 1)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 - 2)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, 사망하였을 때.
 - 3)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4) 입소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.

제 21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제1조 (운영규정의 개정방법)

운영규정의 개정(안)발의는 운영위원회, 종사자 또는 시설관계자에 의하여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 또는 회의를 거쳐 운영규정의 변경이 가능하다.

제 22장 운영위원회의 설치,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 (운영위원회의 회의)

- 위원장은 분기별 1회씩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◆ 조직, 인사, 급여, 회계 물품 규정

- 1)조직 : 직제, 업무분장 등
- 2)인사 : 채용 - 공개채용, 워크넷, 교차로 등 (승진 - 해당사항 없음)
- 3)인사이동 : 해당사항 없음. 휴직, 복직, 징계 등
- 4)급여 : 지급일 익월 10일, 임금, 퇴직금, 특별상여금 (명절, 생일, 공로 포상 시 상품권 지급)
- 5)회계 : 회계처리 원칙 등
- 6)물품 : 시설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(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)을 관리한다